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재난안전관리실

총 7건 건의

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공사 축소 (표준시장단가적용기준개정)	건설혁신과
2	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	건설혁신과
3	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상향	건설혁신과
4	직접시공 실적인정금액 상향	건설혁신과
5	직접시공 대상공사 금액 확대	건설혁신과
6	건설기능인 등급별 노임단가 세분·차등 적용	건설혁신과
7	고질적 통행료 미납 저감을 위한 수납 위탁 대상 확대	도로계획과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공사 축소 (건설혁신과, '24. 3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고, 100억 원 이상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표준품셈 단가 대비 85% 수준의 공사비 산정으로 공사비 부족의 원인이 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준시장단가는 품셈단가 대비 85% 수준으로 낙찰률이 적용 되면 지속적으로 단가 하락하고, 공사비 부족의 원인으로 악순환 반복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대상 공사를 100억 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 <p>※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」</p>	<p>(행정안전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(건설혁신과, '24. 3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격심사제(300억원 미만)의 경우 다수의 입찰자 중 낙찰 하한율에 근접한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받은 운찰제 시행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정공사비 확보는 공사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나 원자재 가격, 물가 상승 등 현실 반영에 미흡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격심사제 낙찰자 결정기준 낙찰하한율 적정 상향 조정 (공사규모별 5% 상향) <p>※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」</p>	<p>(행정안전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3.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상향 (건설혁신과, '24. 3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저가 하도급'으로 인한 손실 떠넘기기 및 발주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 만연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가하도급→노무비 부족→미숙련공 고용→품질·안전 저하의 악순환 반복 및 하도급 승인요청을 발주자가 관행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무분별한 하도급 발생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하도급비율 82%를 90%로 상향 조정 및 「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」에 하도급계약 비율에 따른 감점 항목 신설 <p>※ 관련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, 「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」</p>	<p>(국토교통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4. 직접시공 실적인정금액 상향 (건설혁신과, '24. 3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공사실적 평가 항목에 직접시공한 금액의 20%를 공사실적에 합산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도급, 하도급의 경제적 유인에 따라 만연한 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사업자 인센티브 방안 마련 필요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(종합), 별표2 (전문),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직접시공 부분을 실적으로 가산하는 비율을 상향(20%→50%)하여 직접시공 유도 <p>※ 관련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</p>	<p>(국토교통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5. 직접시공 대상공사 금액 확대 (건설혁신과, '24. 3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70억원 미만 공사는 금액별 일정비율 이상 직접시공 의무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도급, 하도급의 경제적 유인에 따라 만연한 하도급 관행, 실질적 공사비를 낮추고 저가의 자재·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품질 불량 발생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접 시공 의무대상 비율 상향 조정(70억원 → 100억원) ○ 공사금액단계별기준을 삭제하고 100억원 미만 모든구간에서 50% 이상 직접 시공토록 일원화 및 50% 이상 적용에 따른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 신설 <p>※ 관련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</p>	<p>(국토교통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6. 건설기능인 등급별 노임단가 세분·차등 적용 (건설혁신과, '24. 3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능등급제* 시행 이후 서울시 자체 숙련 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220개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있음 <p>* 기능등급제 : 건설근로자의 환산경력 기준 초·중· 고·특급 4단계 등급 부여('21.5.27. 시행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숙련도(등급)를 반영한 임금체계 없음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따른 등급별 차등노임 산정 (지급액 : 특급 > 고급 > 중급 > 초급) <p>※ 관련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</p>	<p>(국토교통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7. 고질적 통행료 미납 저감을 위한 수납 위탁 대상 확대 (도로계획과, '24. 1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 민자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장에게 미납통행료 수납 위탁할 수 없음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자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강제징수 권한이 없어 고질적 통행료 미납이 발생함 (타 유료도로에 비해 통행료 미납발생률이 높음)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유료도로법」 제21조(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)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(통행료 등의 강제징수)의 수납 위탁 대상에 '특별시장' 추가 <p>※ 관련법령 : 「유료도로법」 및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</p>	<p>(국토교통부)</p>